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국고보조사업의
경비 부담비율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고려〉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9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8.
3. 회부연월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정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의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고보조사업 경비 부담의 비율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 고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국고보조사업의 경비 부담의 비율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 고려하여 부담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2조 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 ----- ----- ----- ----- -----, <u>이 경우 재정자립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u>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① 사업의 성격, ②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③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 제1항은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을 별표로 정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자치구	도	시·군
1	119구조장비 확충	100	0	100	0
2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30	70	30	70
3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50	50	50
4	방조제 개·보수	70	30	70	30
5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	...	...	...	...	...
95	축산물 검사	70	30	70	30
96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100	0	0	100

자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제22조제1항 후단은 위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 비율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의 추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²⁾.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부담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면, 재정자립도 등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정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³⁾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⁴⁾는 차등

2) 김우림,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7면, 8면 참조, 국회예산정책처, 2021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보조율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1] 에서 구체적인 기준보조율 수치를 명시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제5조제1항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가. 계산식: $\{(\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재정보전금} + \text{조정교부금})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가. 계산식: $\{\text{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text{일반회계} + \text{특별회계}) / \text{세출예산 순계 규모}(\text{일반회계} + \text{특별회계})\} \times 100$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한편,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5)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등의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된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와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기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지방재정법」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그 밖에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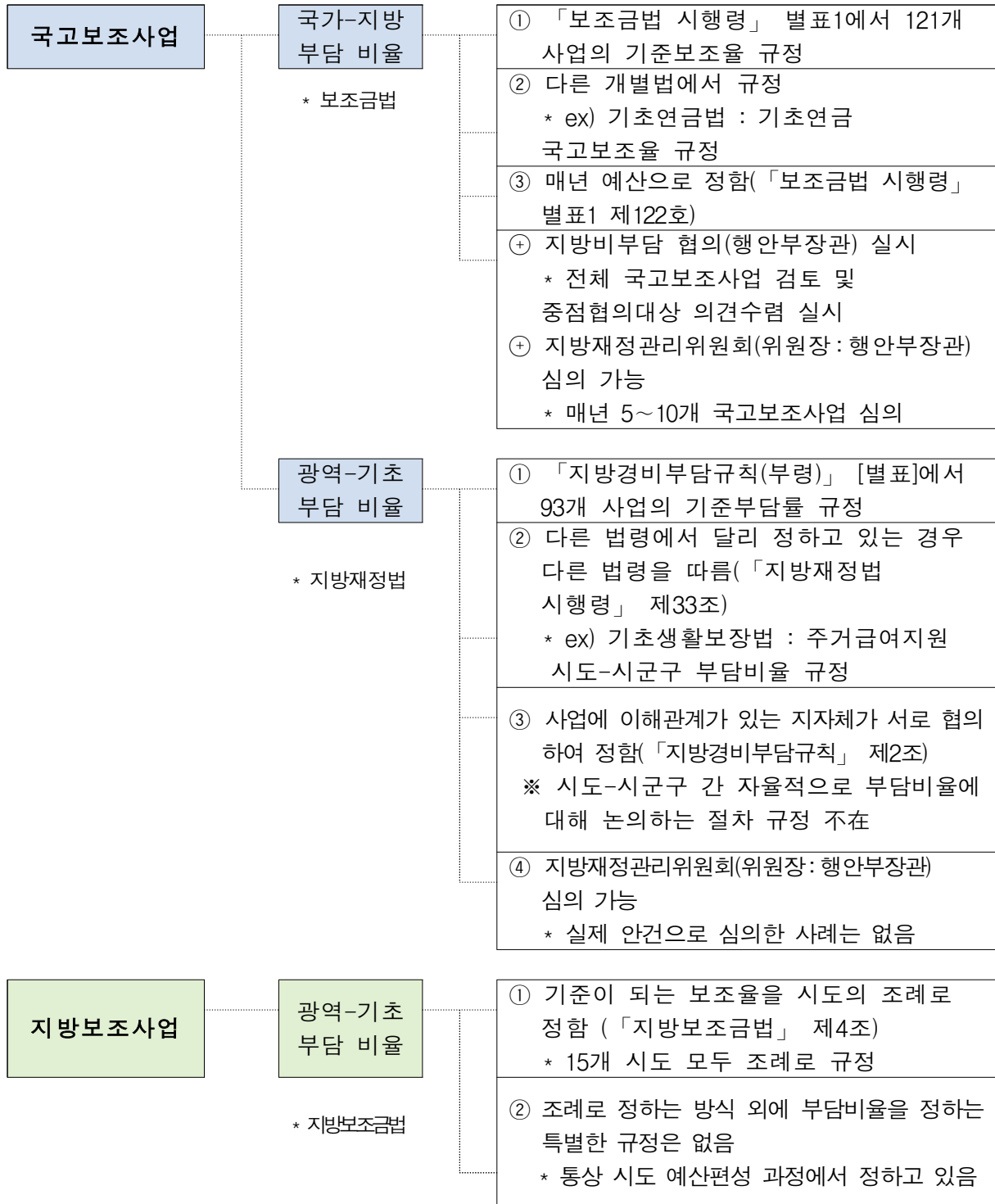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시·도-시·군·구 간 지방비 부담 비율은 사업 성격, 사업 효과 등 지역별·사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재정상황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시·도-시·군·구 간 재정상황 등을 감안한 협의를 통해 편성이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38

참고

국고 및 지방 보조사업 부담비율 결정 방식



※ 자료 : 행정안전부